

〈자 료〉

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방법

李 哉 協*

1. 머리말

본고는 미국 로스쿨에서의 학생선발 제도와 운영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우리 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법적 시각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법률가는 국제적인 감각과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능력에 덧붙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법률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 선발도 이러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 법학교육의 목표와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가象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해보면 미국 로스쿨이 학생선발 시 어떠한 측면에 중점을 두는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 법학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목표는 법적 사고능력, 법적 추론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이를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¹⁾ 미국 로스쿨이 양성하고자 하는 법률가상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아닌 ‘문제해결사로서의 법률가(lawyers as problem-solvers)’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가’(lawyer)란 변호사(attorney)나 법실무가(legal practitioner)의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로스쿨을 통해서 양성되는 법률가는 법조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때로는 기업을 직접 운영하며 경제를 이끌어가는 침병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대외적인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국제법무대학원 미국법무학과 주임교수

1) 최봉철, “미국의 법학교육: 개혁과 현황”, **성균관법학**, 제11호 (비교법연구소, 1999), p. 12.

협상가로서 외교·국방·국제통상의 영역에서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직업정치인으로 의회, 행정부, 정당에서 활약하는가 하면, 언론인으로, 작가로 활동하는 법률가들도 많이 있다. 즉 로스쿨이 양성하는 법률가는 사회 안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그 중 가장 빈번하며 중요한 것은 분쟁과 갈등의 조정)들을 해결하는 전문가이다.

로스쿨에서 선발하는 미래의 법률가로서의 중요한 소양 중 하나는 무엇보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질문(right questions)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legal issues)을 찾아내고 여기에 올바른 질문을 구성하는 능력이 바로 ‘법률가적 사고(thinking like a lawyer)’이며, 이를 함양하는 것이 바로 로스쿨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체이다.

미국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인위적으로 이론과 실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²⁾ 왜냐하면 법학교육의 출발점이 현실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교과과정 속에서 이론과 실무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례분석(case analysis)을 통해 사실과 법이론이 접목되는 과정을 학습하며 스스로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리하여 차후 발생 가능한 모든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나보다는 판결에 도달하게 된 법적 추론(legal reasoning)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과과정에 있어서도 창의적이고도 학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법해석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2) 미국의 법학교육이 실무교육 위주라는 인식은 미국 법학교육의 목표와 역사적 발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미국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우리나라 법과대학에서의 교육보다 일견 실무교육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교육에만 치중하여 충분한 법이론의 습득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가장 체계적인 보고서 중 하나인 「MacCrate 보고서」(미국변호사협회, 1992)에서도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동시에 로스쿨이 준비된 변호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 로스쿨 교육에 있어 실무교육이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Wallace Loh, “Symposium on the 21st Century Lawyer: Introduction: The MacCrate Report-Heuristic or Prescriptive?” *Washington Law Review*, Vol. 69 (1994), pp. 508-09. 「MacCrate 보고서」에 관해서는 문재완, “로스쿨 제도도입에 따른 교육내용의 변경”, *법학논총*, 제27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p. 69 참조.

다양한 실험적인 이론구성이 시도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에서는 이러한 이론 교육이 매우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고, 다른 인접학문과의 복수전공학위과정(J.D./M.B.A., J.D./Ph.D. 등)이 개설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로스쿨의 교수진 중에는 비법학전공의 교수도 다수 있으며 법학학위 이외의 인접학문 학위를 추가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미국 로스쿨에서는 이러한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이를 실현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로스쿨이 선호하는 지원자의 모델을 일반화하여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엄격하고 구조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성실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둘째 학부전공에 상관없이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논리력을 갖춘 자, 셋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이다.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로스쿨에서는 학생선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어떻게 보면 로스쿨의 성패는 우수한 학생선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학생선발의 문제는 개개 대학의 입장에서 아마도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³⁾ 앞으로는 우리 사회 내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진 최고의 인재들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유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방법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학생선발 시 주요 고려사항

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 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교들 간의 자율과 상호간 경쟁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미국 로스쿨들은 선발기준 및 기술을 향상시키고 입학관련 정보들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수집을 위해 로스쿨입학협의회(Law School Admission Council: LSAC)를 결성하였다.⁴⁾ LSAC는 로스쿨 입학

3)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생선발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글로는 김형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의 실시방안”, 제4회 한국법률가대회 자료집: Session V. 로스쿨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한국법학교수회, 2004. 10. 22~23.), pp. 17-72 참조.

4) LSAC는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인증을 받은 200여개의 미국 로스쿨과 15개의 캐나다 로스쿨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http://www.lsac.org/LSAC.asp?ur>

업무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사무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로스쿨 입학과 관련한 각종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입학선발방식을 보다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 과제를 공모하기도 한다. LSAC는 로스쿨의 입학사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스쿨이 참고할 사항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자의 학부재학중의 성적을 검토함에 있어서 모든 로스쿨이 LSAC가 제공하는 로스쿨자료통합서비스(Law School Data Assembly Service: LSDAS)를 사용한다. LSAC는 로스쿨 입학지원자로부터 대학재학중의 성적표를 제출받은 후 지원자의 GPA를 4.5점 만점기준으로 표준화한다. LSAC의 사무국은 지원자가 특정 로스쿨에 지원한 경우 LSDAS 보고서를 그 로스쿨 및 본인에게 송부한다. LSDAS의 보고서에는 대학의 학부성적, 학력, LSAT 점수 등이 포함된 대학재학중의 전체 과목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LSDAS는 일반대학원 및 경영대학원이나 의학대학원과 같은 전문대학원의 성적을 보고하지는 않지만, 로스쿨에 대해서는 이런 성적표도 LSDAS의 보고서와 같이 송부한다.

LSDAS는 지원자 서류를 통일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뿐 그것을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작업은 개개 로스쿨의 몫이다. 로스쿨은 LSDAS로부터 건네 받은 학부성적 평가방식이나 LSAT의 득점분석에 관한 통계적 자료를 참고로 하여, 지원자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로스쿨은 또한 특정군의 지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LSDAS에 등록된 지원자 파일을 열람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러한 정보공개에 동의한 지원자에 한해 LSAC는 지원자 정보를 로스쿨에 송부할 수 있다.⁵⁾

(1) 정량적 평가지표

가. LSAT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는 로스쿨입학시험(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을 쳐야 한다. LSAT은 실제적 법지식이 아닌 논리력과 분석력을 측정하는 일종의 법학적성검사이다.⁶⁾ 이

¹ lsac/about-lsac.asp.

5) 이를 지원자소개서비스(Candidate Referral Service: CRS)라 한다.

6) LSAT은 “로스쿨 수학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술들, 즉 복잡한 구문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 능력, 주어진 정보를 적절히 구성하고 관리하며 이로부터 함의적으

시험은 일년에 4회(2월, 6월, 10월, 12월)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매년 약 135,000여명이 LSAT에 응시한다. LSAT은 LSAC의 회원교인 202개 로스쿨의 입학에 필수적이다.

LSAT의 역사는 LSAC가 설립된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⁷⁾ 1948년 첫 번째 시험이 실시된 이래 60년 가까이 그 형식과 내용상 몇 차례의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행 LSAT의 형식은(120~180점 기준) 1991년에 만들어졌다.⁸⁾

LSAT가 과연 우수한 로스쿨 학생을 선발하는 적절한 지표인가에 관해 LSAT 성적과 로스쿨 1학년 성적간의 통계학적 상관관계(correlation)를 살펴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0.4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⁹⁾가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학부성적(UGPA)과 로스쿨 1학년 성적(First Year Achievements: FSA)과의 상관계수는 +0.25, LSAT와 UGPA를 함께 묶었을 경우에는 +0.5로 나타났다.¹⁰⁾ 로스쿨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개인적 변수들(예컨대 학업습관, 의지, 가족에의 의무, 수업의 질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 LSAT 성적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LSAT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¹¹⁾ 학생선발에 있어 장차 로스쿨에서의 학업성과를

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리와 주장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이다. *LSAT Information Book*, p. 1, at <http://lsac.org/pdfs/2006-2007/informationbk2006.pdf>.

- 7) LSAT 시행 이전에는 전적으로 개개 로스쿨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 학생들이 선발되었다. 표준화된 테스트로서 최초로 개발된 예는 1920년대 중반 West 출판사의 것(Stoddard-Ferson test)과 1930년경부터 Yale Law School에서 자체 개발된 적성시험이다. William P. LaPiana, *A History of the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and the LSAT*, a keynote address given to LSAC Annual Meeting (1998).
- 8) Thomas O. White. “LSAC/SSAS: A Brief History”,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 34 (1984), pp. 370-371.
- 9) 상관계수란 어떤 관측대상 집단에서 각각의 관측단위를 갖는 어떤 2가지 속성에 주목하여 그 값을 관측했을 때, 양쪽 사이에 존재하는 직선적인 관련의 강약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그 값은 -1(완전 역상관관계)에서 +1(완전 정상관관계) 사이이다.
- 10) Lisa C. Anthony, Vincent F. Harris & Peter J. Pashley,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Predictive Validity of the LSAT: A National Summary of the 1995-1996 Correlation Studies*, 1999.
- 11) LSAT에 대한 비판으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로스쿨 졸업 후 성공적인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예측하는데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점, 그리고 LSAT 점수가 응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Abiel Wong, “‘Boalt-ing’ Opportunity?: Deconstructing Elite Norms in Law School Admissions”,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량적 지표임에는 틀림없다.¹²⁾

LSAT은 객관식 5섹션의 문제와 논문(essay)으로 실시된다. 논문은 성적에 합산되지 않고, 다만 지원 학교에 송부되어 해당 학교가 입학생 사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객관식 문제는 3개 영역에서 출제되는데, 이 영역은 각각 논리력(logical reasoning) 2섹션, 분석적 추론능력(analytical reasoning) 1섹션, 독해력(reading comprehension) 1섹션이다.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들 3개 영역과 그 중 하나의 영역이 추가로 더해져서 5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복된 영역 중 한 섹션은 실제 시험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실험적 섹션(experimental section 혹은 'dummy section')이다. 이 섹션은 새로 출제된 문제들의 난이도와 신뢰도를 사전검증(pretest)하기 위해 더해진다.¹³⁾ 그러나 수험생들은 어느 섹션이 점수에 반영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실험적 섹션은 시험일자,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LSAT에서 측정되는 것은 논리력, 분석력, 추론능력이다. 논리력 분야는 주어진 문장에서 논리적 결함을 찾아내는 것으로 24~26 문제가 출제된다. 분석적 추론능력 분야는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해결하는 내용으로 24 문제가 출제된다. 장문을 읽고 답하는 독해력 분야는 TOEFL이나 GRE 등에서 출제되는 독해력과는 달리, 주어진 지문의 내용적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비

Georgetown Journal on Poverty Law and Policy, Vol. 6 (1999), pp. 224-234.

- 12) 다만 상관계수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경계해야 한다. 상관계수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에서 두 변수 사이의 직선적인 관련성을 나타낼 뿐 특정 변수의 설명력(explanatory power)을 나타내 주지는 않는다. 회귀모형에서 추정된 회귀선이 실제로 관측된 표본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는가, 즉 회귀선이 실제관측치를 어느 정도 대표하여 그 적합성을 보여주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squared)가 쓰이는데, 이는 상관계수를 제곱한 것과 같으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풀이하자면 LSAT과 FSA와의 상관계수가 +0.4라면 결정계수는 그 제곱의 값인 0.16인데, 이는 LSAT 점수가 FSA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16%의 비율에 해당하는 설명력을 갖는다는 말이다. 또한 LSAT 및 UGPA를 혼합했을 경우 +0.5의 비교적 의미있는 상관계수를 갖지만 이 두 변수는 전체의 25%(0.5의 제곱)만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75%의 비율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변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이 두 변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로스쿨 입학사정 시 고려하는 변수 중 정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어도 통계학적 의미에서 아직까지 LSAT 점수나 UGPA와 같은 수준의 설명력을 갖는 변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이다.
- 13) LSAT에 출제되어 점수에 반영되는 문제들은 이러한 검증절차를 2번 이상 거친 것들이라 한다.

판적 독해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¹⁴⁾ 지문과 관련된 분야의 전공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인문·사회·자연과학의 분야에서 고르게 출제된다. LSAT의 각 섹션은 35분 만에 25개 지문 이상을 답해야 하기 때문에 원어민의 경우에도 시간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시험이다.

다른 유형의 미국 대학원 입학시험(GRE, GMAT 등)과는 달리 로스쿨 입학시험인 LSAT의 점수는 응시한 모든 횟수의 LSAT 점수의 평균점이다.¹⁵⁾ 따라서 수험생은 충분히 시험준비가 되었을 때 응시해야 한다.¹⁶⁾ LSAT 문제에 대한 정답은 공개되지 않고 성적표에도 응시자들이 어떤 섹션에서 얼마의 점수를 받았는지 나타나지 않는다. 수험생은 시험실시일 후 5일 이내에 한해(시험 채점개시 전) 자신의 점수를 LSDAS가 보고하지 않도록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점수는 LSDAS 리포트에 포함되지 않지만, 취소사실은 반영된다. LSAT 응시회수 및 취소한 사실이 많을 경우 로스쿨 입학사정 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대체로 LSAT 응시회수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LSAT은 2년 내에 3번까지 응시할 수 있고, 점수가 취소된 시험도 응시회수 제한에 포함된다.

LSAT은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점수가 더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 한다. 논리력, 추리력, 독해력 등은 단기간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LSAT 준비를 도와주는 사설 준비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1996년~1997년 응시생들의 1/3 가량이 이러한 사설 준비과정을 이수했고, 이들과 비이수자 간의 LSAT 점수의 차이는 1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¹⁷⁾ 따라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사설 준비학원의 코스를 이

14) 오히려 지문을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그리하여 LSAT 시험을 지도하는 미국의 한 사설 준비과정에서는 주어진 지문의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만 읽고 답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15) LSAT의 표준점수는 응시생의 백분율 등위를 나타내고, 그 분포는 120에서 180 사이이다. 즉 180점의 의미는 모든 문항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120점 역시 모든 문항을 맞추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180점을 받은 학생의 경우 전체문항 중 2~3 문항을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6) LSAT 시험을 여러 번 응시했을 때 평균점이 높아지기는 매우 힘들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응시했을 경우 표준점수가 3점 이상 오를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연히도 표준점수 3점 차이는 LSAT 점수의 오차범위(2.6점)와 거의 같다.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LSAT Scorebands", at <http://www.lsacnet.org/lisac/publications/Scorebands.pdf>. 즉 LSAT 점수는 재응시했을 경우 통계학적 의미를 지닐만한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수하는 것보다는 충실한 학부교육을 통해 논리력과 분석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나. GPA

LSAT 점수와 더불어 로스쿨 입학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지표는 지원자의 학부과정 성적평점(University Grade Point Average: UGPA)이다. 학교에 따라 반영되는 비중이 다르긴 하나 거의 LSAT 점수와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표준화된 점수인 LSAT와는 달리 지원자의 학부성적은 각 학교마다 학점체계와 평가방식이 달라 정량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렵다.¹⁸⁾ LSADS 보고서에서는 지원자의 학부성적을 기계적으로 4.5점 만점으로 변환하지만 지원자가 졸업한 학부의 지명도와 교육의 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로스쿨에서는 학부성적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추가로 행한다. 예컨대 명문학부 졸업생, 학부전공 및 이수과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절히 가감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학년간의 성적의 편차, 성적의 연도별 상승 또는 하락 등도 고려한다.¹⁹⁾

정량적 지표로서의 UGPA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 로스쿨의 정책에 따라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학교들은 LSAT 점수와 UGPA를 조합한 정량적 입학사정공식(formula)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LSAT * x + UGPA * y = Z$ 와 같이 각각의 지표에 반영률을 곱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입학사정에 필요한 점수를 산출한 후 이 점수에 따라 등수를 매긴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 점수를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지원자의 순위를 작성하여 그 순서대로 합격자를 가려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점수를 선발의 최종점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만 합격자군의 하한선 (혹은 상한선)으로 활용하여 일정 범위 이상의 학

17)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LSAT 사설학원의 수강을 통해 점수가 눈에 띄게 좋아진 예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으나 그것은 비원어민으로서 어휘력과 독해력 향상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이지 LSAT 점수가 문제유형의 암기와 반복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8) 캘리포니아의 몇몇 주립대학 로스쿨에서는 지원자의 출신학부의 평판도에 따라 학부성적을 자체적으로 점수화해 조정해 오던 관행 때문에 물의를 빚기도 했다. William C. Kidder, "The Rise of the Testocracy: An Essay on LSAT, Conventional Wisdom, and the Dismantling of Diversity", *Texas Journal of Women and the Law*, Vol. 9 (2000), p. 175, footnote 25.

19) Lawrence C. Foster, *American Leg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on file with the author).

생들만 입학사정의 대상으로 하여 그 범위 안의 학생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성적 지표(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를 고려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한다.²⁰⁾ 신입생 선발정책과 학풍에 따라 LSAT 점수를 더 반영하는지 UGPA를 더 반영하는지의 차이가 있지만 랭킹이 높은 학교일수록 정량적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부성적(UGPA)은 제도화된 교육체계 내에서 지원자의 학업성취도를 예상할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그 객관성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 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미국 로스쿨은 다른 어떤 학위과정보다도 구조화되고 밀도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로스쿨은 지원자의 학부성적을 통해 그가 엄격한 로스쿨의 교육환경 속에서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부전공이 법학과 얼마나 근접한 것인가의 여부보다는 어떤 전공이든 학부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는가가 중요시된다.

사실 미국 로스쿨 지원자의 학부전공은 정치학·사회학 등의 사회과학, 영문학·역사학·철학 등의 인문학, 수학·물리학 등 자연과학 전공자들을 비롯해 매우 다양하다. 로스쿨 입학담당관의 말을 빌리면 특정전공에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논리력과 분석력이 훈련된 전공자들을 선호하며 미국 대학 중 소수의 학부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학(Legal Studies) 전공자는 오히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²¹⁾

20)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시건 대학교 (University of Michigan) 로스쿨이 입학사정시 인종을 한 고려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Grutter v. Bollinger*, 123 S. Ct. 2325 (2003). 동 사건의 원심판결을 보면 미국의 명문 로스쿨들이 실제로 어떤 절차에 의해 입학결정을 내리며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엿볼 수 있다. 미시건 대학교 로스쿨은 LSAT 점수와 UGPA를 혼합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1991년에 내려진 입학허가 중 87%가 두 지표상 고득점자였다. 그러나 이 두 지표상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라도 학부성적이 출중하나 다만 표준화된 시험에 소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혹은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 출신으로 학교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입학할 허가하였다. *Grutter v. Bollinger*, 137 F.Supp.2d. 821 (E.D.Mich. 2001), pp. 825-829.

21) 이러한 사실은 미국 학부과정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이 쇠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J.D. 과정은 미국 법학교육에 있어서 알파요 오메가이다. 어떠한 법률관련 분야로 진출하든(학계 포함) J.D. 학위 이상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체제이다. 현재 미국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대학은 앰허스트(Amherst) 대학인데, 이곳은 연구중심 대학(research university)이 아닌 교양교육 중심대학(liberal arts college)이다. Austin Sarat,

(2) 정성적 평가지표

미국 로스쿨 입학사정 시 LSAT 점수와 UGPA 이외에 고려되는 사항은 지원서에 포함된 인적사항(경력, 대학원, 사회경험, 연륜, 전공, 다양성),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이다. 상위랭킹의 명문 로스쿨일수록 정성적 평가지표에 의해 학교가 요구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예일(Yale) 로스쿨의 경우 지원자 그룹 중 최상위권(LSAT 점수가 175 이상이고 학부성적 3.75 이상인 지원자 군)의 합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LSAT 점수와 UGPA 이외의 정성적 지표가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대다수의 명문 로스쿨에서는 LSAT과 UGPA 이외의 정성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학교 홍보책자와 웹사이트를 통해 표방하고 있다.

<표 1> Yale 로스쿨 합격생들의 LSAT, UGPA 분포도(2002~2004)

UGPA	LSAT 점수						
	154 미만	155~159	160~164	165~169	170~174	175~180	합계
3.75 이상	283/2	355/14	760/35	1207/129	1027/263	357/174	3989/617
3.5-3.74	336/2	318/3	664/9	869/37	582/45	194/30	2963/126
3.25-3.49	337/1	249/1	366/6	398/8	216/6	40/4	1606/26
3.0-3.24	301/0	123/1	161/1	110/0	58/0	22/0	775/2
3.0 미만	410/0	108/1	82/0	49/0	39/0	14/0	702/1
No GPA	118/0	45/0	86/0	76/5	33/4	11/2	369/11
합계	1785/5	1198/20	2119/51	2709/179	1955/318	638/210	10404/783

출처: Yale Law School 웹페이지. 지원자수/합격자수.

<http://www.law.yale.edu/outside/html/Admissions/admis-jdoverview.htm>

미국 로스쿨들은 입학전형에 있어 인종적, 민족적 소수집단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적극적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의 로스쿨 인가기준도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 배려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²²⁾ 또한 전국적

"On the Margin: Humanities and Law", *Yale Journal of Law and the Humanities*, Vol. 10 (1998), p. 405.

22) ABA Standard 211(균등한 기회 제공) "건전한 법학교육의 정책과 이 기준에 일치하도록, 로스쿨은 건전한 교육정책과 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로스쿨은 구체적인 행위로

명성이 있는 로스쿨(national law school)들은 지원자의 출신지역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타주 출신, 외국인 지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로스쿨에서는 본교 학부 출신 지원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물론 주립대학의 경우 일정 비율의 학생을 자기 주 출신으로 채워야 하는 요건이 있고, 일반적으로 본교 학부 출신 지원자들이 당해 로스쿨에 대한 호감 및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입학전형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순혈주의는 우려할만한 일이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와는 달리 명문학부의 수가 많고 그 층이 매우 두텁다. 또한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거점도시가 미국전역에 분포하고 있어 수평적 이동(horizontal mobility)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 보려는 경향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따라서 미국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본교 학부출신의 지원자를 양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²³⁾

현재 로스쿨 입학생들의 평균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직장경험이 풍부한 만학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미국 로스쿨이 다양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반증한다. 한 예로 노스웨스턴(Northwestern) 대학교 로스쿨의 2004년 입학생 중 91%는 학부 졸업 후 1년 이상, 68%는 2년 이상의 직장경험이 있었다. 지원자의 연령대는 21세부터 38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25세였다. 또한 여학생과 소수인종 학생들의 비중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 학교의 2004년

써 여러 형태로 차별받아 왔던 인종적 또는 민족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능력있는 구성원들에게 법학공부와 법조진출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한다는 약속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약속에는 입학허가과정에서 그와 같은 잠재적 지원자들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한 관심과 특별전형의 노력, 이러한 학생들의 특수한 재정적 필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그러나 로스쿨에게 이러한 지원자와 다른 학생들 사이에 다른 재정 지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ABA Standard 212(장애인) “로스쿨은 그 법학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로스쿨은 능력있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법학공부와 법조진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격을 갖춘 교수와 직원의 고용 및 승진과 다른 종류의 유지에 관하여서도, 로스쿨은 결코 신체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 23) 이 점에 있어 우리나라의 사정은 미국과 매우 다르다. 학교의 랭킹에 따라 거의 수직적으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특히 지역적 편차가 매우 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제시한 법률안에서는 제도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당해 대학 외의 대학 출신자가 전체 입학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4조 제3항.

입학생의 경우 그 비중은 각각 48%와 25%로 나타났다(주요 로스쿨의 입학생 현황은 <표 2> 참조). 또한 인접학문의 석사, 박사급의 학위를 가진 입학생도 다수 있었다.

<표 2> 주요 로스쿨의 입학생 현황

입학지표 학교명	75% UGPA	25% UGPA	75% LSAT	25% LSAT	합격자	등록자	여학생 비율	소수자 비율
UC Berkeley	3.90	3.65	168	160	769	286	60.6	34.5
UC Hastings	3.70	3.39	165	160	1410	427	54.8	32.5
UCLA	3.83	3.51	168	162	965	302	48.3	30.7
U of Chicago	3.74	3.44	171	167	747	194	43.1	29.7
Columbia	3.82	3.52	173	167	1143	395	48.8	31.8
Cornell	3.72	3.48	168	165	778	194	48.7	23.2
Duke	3.81	3.47	169	162	875	202	45.1	20.6
Georgetown	3.78	3.42	170	167	1940	451	48.4	25
Harvard	3.94	3.76	174	169	849	554	43.6	26.3
Michigan	3.76	3.43	169	164	1164	406	44.1	24.1
Minnesota	3.82	3.36	165	160	752	281	45.4	16.6
NYU	3.82	3.52	173	168	1617	430	48.2	22.1
Northwestern	3.80	3.40	170	166	823	242	47.5	24.6
U of Penn	3.83	3.45	170	164	770	261	47.2	26.5
USC	3.72	3.50	167	164	1251	219	47.3	38.9
Stanford	3.95	3.73	171	166	386	170	51.3	34.3
Vanderbilt	3.82	3.46	166	162	682	198	48.4	22.4
Virginia	3.81	3.55	170	165	996	369	42.5	15.9
Yale	3.97	3.80	175	169	241	194	46	29.2

출처: Official Guide to Law ABA-Approved Law Schools, 2005 On-line Edition에서 재구성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는 LSAT 점수와 UGPA에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인간적 면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로스쿨 지원 시 통상 이력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이력보다는 지원 동기, 특별한 경험 등이 서술되는 것이 보통이고, 로스쿨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작문능력을 함께 평가한다. 지원자 개인의 면접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로스쿨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면접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로스쿨에서 학생선발의 요소로서 평가면접(evaluative interview)을 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에서는 입학전형이 특정 일자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 개개인을 한시간에 한자리에 모아놓고 직접 대면하여 면접하기에는 비용과 인력소모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지원자들이 자발적으로 로스쿨을 방문하여 입학담당관과 대면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보습득을 위한 면접(informative interview)이지 지원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면접을 입학사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전 지원자들에게 이를 요구하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²⁴⁾

지원자 면접을 하는 로스쿨에서 면접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²⁵⁾

- 지적 능력(intellectual ability)
- 인간적 성숙(maturity)
- 성실성, 타인에 대한 배려(sincerity and concern for others)
- 타인의 의견에 대한 경청(listening skills)
- 경력의 성장(career progression)
- 경력의 집중도(career focus)
- 과외활동의 폭(extracurricular activities/breadth)
- 지도자로서의 잠재력(leadership potential)
- 지원학교에의 관심도(motivation)

(3) 전형방법

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은 수시로(rolling basis)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입학사정은 빠르게는 학기 시작 1년 전부터 늦게는 학기 시작 하루 전까지 이루어진다. 학교마다 로스쿨 입학위원회(admissions committee)가 있어 학교가 정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고려하여 위원들 간에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합격자들을

24) 한 예로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학부졸업예정인 지원자들 전원에게 면접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이외 지원자들에게도 이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총지원자수의 60%가 면접을 받았다. 타지역이나 외국에서의 지원자들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졸업생 면접관(alumni interviewer)을 통해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다.

25)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Alumni Interviewer Handbook*, 2004 edition.

선별한다.²⁶⁾

입학허가는 당해 로스쿨의 과거 경험에 의거하여(등록률 등) 입학정원의 3~4 배수의 지원자들에게 발송된다. 대부분의 로스쿨 지원자들이 수개의 로스쿨에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생들이 다른 학교에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상 하버드(Harvard), 예일(Yale) 등 최상위권 학교나 특정지역 학생들이 지원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로스쿨일수록 등록률(matriculation rate)이 높은 편이다. 최종적으로 로스쿨에 등록하는 지원자 숫자는 해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로스쿨에서 정확한 입학정원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²⁷⁾

예비합격자(wait-listed applicants)의 선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선발절차가 진행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예비합격자의 순위를 매겨 결원이 생길 때마다 기계적으로 입학허가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예비합격자 개인의 순위를 산정하지 않고 단지 성적순으로 예비합격자군(성적순으로 A, B, C 등)을 나누어 놓은 후, 결원이 생길 때마다 높은 순위의 군에 속한 지원자들 모두를 다시 심사하여 그 중에서 추려내는 경우도 있다.

3. 평가 및 시사점

(1) 로스쿨 간의 치열한 경쟁

미국 로스쿨에서의 학생선발 방법은 다면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마다 학생선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우수한 입학생 선발이 학교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서 유능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첫 단계는 자질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며, 로스

26)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대표가 입학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예컨대 하와이 대학(University of Hawaii) 로스쿨의 경우 학생대표는 입학위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히하게도 이 대학 로스쿨에서는 학장이 입학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다. Richard S. Miller, *Law School Management, Finances, Maintaining Education Quality, Law Student Incentives, etc.: Experience at the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a paper given to Faculty, Aoyama Gakuin University, Tokyo (Jan. 25-Feb.5, 2001), p.8.

27) 예를 들자면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은 매년 4,000~5,000명의 지원자 중에서 약 200명 정도의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지원자 중 823명에게 입학을 허가하였으며 그 중 242명이 등록을 하여 목표보다 40여명이 초과로 등록을 하였다(표 2 참조). 따라서 당해 연도의 등록률은 29.4%이다.

쿨 간에는 이러한 지원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한다.

로스쿨의 가장 바람직한 입학생은 로스쿨 재학 시 뛰어난 학업성취를 이룩하고,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명망 있는 직장에 취직하고, 아울러 사회활동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한 학교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는 사람이다. 학교발전이 어떤 면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입학사정의 항목들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학교는 법조계 내에서의 학교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연방법원으로 법원서기(judicial clerks)를 배출하고자 하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통상전문가 등을 더 많이 배출하고자 할 것이다. 학교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연 어떠한 학생을 어떻게 뽑아야 하느냐를 고심하고 있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입학기준이 만들어지고 또 개선된다. 학생의 성공이 로스쿨의 성공이고 따라서 법학수학에 성공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일은 그 어느 일보다도 우선적이다.

미국에서 학교마다 이렇듯 경쟁적으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미래 법률가로서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도록 만든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로스쿨 간의 자유경쟁을 독려하는 시스템 때문이다. 학교간의 경쟁이 없어도 다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로서는 더 이상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인센티브를 잃게 된다. 즉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최고의 인재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사회에 나가 공헌하고 그것이 학교의 명성으로 이어질 때에만 로스쿨은 비로소 우수한 학생선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있어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순수하게 학생선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더라도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고 이를 법조인수와 연계하는 것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이다.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더라도 거의 모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상황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굳이 애써서 우수학생 유치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고, 이들을 유인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이유가 없게 된다. 학생선발 시 능력보다는 오히려 학연, 지연 등의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²⁸⁾

28)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국회 교육위원회 2005. 11. 3), pp. 38-39.

물론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여러 가지 기준을 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인 대학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규제에 휘둘리는 한 대학의 위상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대학이 주도적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더 좁아지는 악순환을 걷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법률가가 실제로 엄선된 최고의 인재가 아니고, 그러한 인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된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법률가들에게 보내왔던 존경과 믿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전문가 양성체제는 일시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학교들 간의 자율과 경쟁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2) 경험의 축적을 통한 공인된 입학지표의 개발

미국 로스쿨에서 통일화된 지표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LSAT이다. LSAT는 LSAC가 설립된 1947년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 후 근 60년 동안 실험과 검증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체제로 발전해 왔다. LSAC는 현재에도 보다 더 개선된 입학사정지표, 즉 로스쿨 학생으로서의 높은 학업성취도, 장차 성공적인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보다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정교한 학생선발방법을 발전시켜 온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전문법률가 양성을 위한 학생선발의 측면에서 너무나 획일적인 기준을 사용해 왔다. 학부생 선발과정에서 수능점수나 논술고사, 그리고 사법시험에서도 실체법적 지식을 일회적으로 테스트함으로써 법률가를 양성해 왔던 우리 법률가양성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혁신적인 체제로 전환했을 때, 과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원자를 어떻게 적절히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사법시험제도의 폐단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음에도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검증된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아닌 대학에서의 전문법학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려면 사법시험체제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의 법률가 양성체제와 법학교육은 거의 연계되지 못해 왔고, 그나마 사법시험 합격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부과정의 법학과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여타 전공과

동일한 획일적인 대학입시 전형방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해왔다. 수능성적과 법학부에서의 학업성취도를 관련지어 연구된 결과도 별로 없었고, 나아가 사법시험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학생선발에 필요한 기준과 독립적인 시험을 개발하는데 지원과 노력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 현재 우리의 법학교육 및 법률가양성체제 내에서 실체법적 지식 이외의 다른 정량적·정성적 변수들의 의미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LSAT를 모델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적성검사를 마련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험이 과연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의 학업성취도와 연관성이 높은 믿을만한 지표인지를 검증하는데도 더 많은 조사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가 제도의 초기단계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법조인수와 연계했을 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즉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학생선발 방식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놓고, 그들이 입학과 동시에 거의 법률가로서의 등용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원이 제한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해 애초에 추구했던 목표인 보다 경쟁력 있는 전문법률가를 우리 사회에 배출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학생선발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양질의 교육 및 경쟁적인 변호사시험을 통해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법률가로 배출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자율적이고 다면화된 기준

미국 로스쿨에서 선호하는 지원자는 기본적으로 분석력과 논리력을 갖추고 학업능력이 우수하며 아울러 타인에 대한 배려, 인간적 성숙도, 직업·인종·지역적 다양성, 리더쉽, 사회봉사, 학교에의 헌신 등 다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로스쿨이 배출하고자 하는 법률가상, 즉 사회 내의 다양한 문제들을 법전문가적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해결사의 덕목과 일치한다.

미국 로스쿨의 입학관련 문헌을 보면 이들이 로스쿨 교육을 통해 대단히 학구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사회로의 공적공헌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변호사와 같은 사적부문에 로스쿨 졸업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스쿨은 그보다는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한다.³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선발 시에도 다양성을 강조한다. 경제적 빈곤층, 인종적 소수자, 외국학생 등에 있어서는 LSAT 점수와 UGPA 이외의 정성적 지표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발한다. 이들이 졸업 후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제도권 내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출발했던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그들의 리걸 마인드와 법률적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하게도 된다. 때로는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법률가의 영역을 개척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말하자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법률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법의 지배를 뿌리내리게 하는 침병이며, 이들을 통해 자연히 법률가의 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법률가의 양산으로 인해 우려되는 법조시장의 충격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설계함에 있어 시각을 우리나라 안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할 전문인력들은 가깝게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 법률시장을 무대로 활약해야 한다. 이미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이 되었고, 법률시장의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의 법률시장을 지키기 위해 내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취지 중 하나라면, 또 다른 취지는 법률시장 개방을 기회로 파악하여 해외의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제한된 숫자의 변호사시장을 상징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의 질과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 육성할 여지는 더 적어진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변화된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우리 사회의 내적·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전문대학

29) 예컨대 미국 로스쿨 중 웰스트리트 소재 대형로펌 등 사적부문으로 졸업생들을 가장 성공적으로 취업시키고 있는 뉴욕대학교(NYU) 로스쿨의 모토는 'a private university in the public service'이다.

30) 참고로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이 1998년에 수립한 학교 발전전략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초일류 로스쿨(Building the Great Law School for the Changing World)'이다.

2006. 6.]

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방법

원으로서의 법학교육을 추구한다면 자연히 우수한 자질과 다양한 시각을 가진 우리 사회의 인재들이 지원할 것이고,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률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